

보도자체로는 문제없지만
부수적인 견지에서 명예훼손 성립 될 수 있어
Hough v. London Express Newspaper, Ltd
[1938] 2K. B., H. No. 688

판시사항

어떤 얘기가, 그 본래의 뜻으로는 남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지만, 어떤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는 남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 그 얘기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그 얘기가 부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런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얘기를 바로 그런 제 2 차적인 명예훼손의 뜻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면 충분하고, 나아가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런 뜻으로 이해하였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사실개요

플로렌스 휴(Florence Sarah Hough)부인 (이하 「원고」라 한다)은, 직업 권투선수인 프랭크 휴(Frank Hough)씨의 아내로서, 런던의 배터시(Battersea)에 살고 있었다.

London Express Newspaper Ltd.(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는 데일리 익스프레스(Daily Express) 신문의 경영주였다.

데일리 익스프레스 지 1937년 12월 22일자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프랭크 휴 씨의 곱슬머리 아내는 모든 시합을 관전한다. 그녀는 ‘집에 있으면 더 안전부절못할 겁니다. 나는 그가 링에 올라갈 때면, 비록 다치지 않을 줄은 알지만, 항상 신경이 곤두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식사를 거르지 않아요. 시합 때 아무리 늦어도 밤에 반드시 더운 요리를 듭니다.’」

원고가 1938년 2월 28일 피고들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상에서 원고는 (제 1 항) 자신이 프랭크 휴 씨의 법률상 아내였고 또 사람들에게 의하여 항상 그렇게 인식되어 왔는데, (제 2 항) 피고들은 위 신문에다 사실과 달리 악의로 위 얘기를 게재하였고, (제 3 항) 그 얘기는 프랭크 휴 씨의 모든 시합을 지켜본 그 곱슬머리 여자는 원고가 아닌 다른 여자였으며, 프랭크 휴 씨와 법률상 혼인한 사이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원고가 허위로 프랭크 휴 씨의 아내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니는 정직하지 못한 여자로서, 위 프랭크 휴 씨는 그녀의 남편이 아닌데도 결혼하지 아니한 채로 그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아이들까지 낳았음을 의미하였고, 또 그렇게 이해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들이 허위로 출판한 악의적인 얘기라는 것, (제 4 항) 그러한 사유로 원고는 그의 신용과 명예가 침해되고 증오와 조소와 경멸을 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답변서에서, 소장 제 2 항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에 대한 기사로 취급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였고, 나아가 위 기사에서 언급된 여자는 실제로 원고가 아니었음은 인정하였으나 그 기사가 소장 제 3 항에서 주장된 뜻을 내포하거나 내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은 부인하였고, 위 주장의 의미가 없다면 명예를 침해할 내용이 아니며, 소장 제 4 항 기재의 주장은 모두 부인한다고 하였다.

사실인정의 과정에서, 원고가 프랭크 휴 씨의 아내이고, 문제의 기사에서 언급된 여자에 대한 묘사는 원고에게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입증되었다.

원고 측 증인으로서, 문제의 기사가 나갔을 때 원고의 이웃에 살고 있던 제시 피트먼(Jessie Pitman) 부인이, 원고를 그 어릴 적부터 알고 있어서, 원고가 프랭크 휴 씨의 아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기사를 보자마자 이를 즉시 원고에게 갖다 보여 주며 무슨 수를 쓰라고 말해주었으며, 동네사람 한 둘을 만났더니 모두 그 기사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증언하였고, 배터시에 살고 있다는 플로렌스 메어디스(Florence Meredith)부인은, 원고를 알고 있고, 원고가 프랭크 휴 씨의 아내라고 알고 있었으며, 신문에서 문제의 기사를 보자마자 원고의 언니를 찾아가 이를 보았는지 물어 보았더니 그 언니는 당장 그 신문 1 부를 사더라는 것, 그 기사가 이웃간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이웃 사람들이 모두 그 기사얘기를 하고 있었고, 점차로 모두 그 신문을 찾아 사는 바람에 데일리 익스프레스 지에 대한 주문이 쇠도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 기사를 읽은 어떤 사람이 이것을 소장 제 3 항에 담긴 취지로 이해하였다거나, 원고를 프랭크 휴 씨의 처로 알고 있던 사람이 그 기사로 해서 원고를 그의 처가 아니라고 믿거나 추측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크룸 존슨 (Croom Johnson) 판사는, 원고 측 증인들처럼 원고에 관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게 되면 이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52 파운드 10 실링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슬레이드 (G. O. Slade)판사의 판시요지

피고들의 주장에 찬동한다. 문제의 기사가 원고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 기사는 원래의 뜻으로 해석한다면, 마치 원고에 관한 특별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전혀 명예훼손의 내용이 없다.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원고가 프랭크 휴 씨의 아내가 아니라는 뜻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 그 기사가 명예훼손의 뜻을 가지려면, 원고를 프랭크 휴 씨의 처로 알고 있었고, 거기서 입증된 여자는 원고가 아님을 알았으며, 그 기사로 인하여 원고는 그의 아내가 아니라 그렇게 행세만 하여온 것으로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받아들여지는 제 2 차적인 뜻에 따라 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 얘기가 단지 제 2 차적인 뜻으로만 명예를 침해할 때에는, 원고는 그 명예가 침해되는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이 명예훼손의 뜻을 갖게 되는 정황까지 주장, 입증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Spencer Bower on Actionable Defamation, 2nd ed.p39. Art. 16 and note n. ; Nevill v. Fine art, & C., Insurance Co., [1897] A. C., 68; Toller v. J. S, Fry & Sons, Ld, [1930] 1 K.

B.467; (1931) A. C. 333 각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그녀를 프랭크 휴 씨의 처로 알고 있던 사람이 그 기사로 말미암아 그녀를 그의 처가 아니라고 믿게 되었다는 주장은 옳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녀를 프랭크 휴 씨의 처로 알고 있던 사람이 그 기사로 말미암아 견해를 바꾸게 되었음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 기사를 제 2 차적인 소위 명예훼손적인 의미로 이해하도록 하는 그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그 기사로부터 원고가 프랭크 휴 씨의 처가 아니라는 추론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피고들이 그 기사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그 기사에 명예훼손적인 의미를 부여할 특별한 사실이 그 일부 독자에게 인식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출판일에 피고들에게도 인식되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그 기사를 간행한 때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통상의 뜻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얘기를 하였으므로 인한 명예훼손의 소송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도 이는 정당한 항변으로 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어 오고 있음은 분명하다: Hulton & Co. v. Jones [1910] A. C. 20 그러나 특별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다른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때에만 명예훼손의 뜻을 갖게 되는 기사의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Cassidy v. Daily Misser Newspapers, Ltd. [1929] 2K. B. 331 사건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위 사건에서는 3 인의 원고 측 증인이 원고를 M.C.의 처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들의 신문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함에도 그의 아내라고 위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음을 입증하였지만,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입증이 없기 때문이다.

브런드리트 (D. F. Brundrit) 판사

원고 피 항소인의 주장에 찬동하였으나, 논지를 펴지는 아니하였다.

슬렛서 (Slessor)판사의 판시요지

이 사건에서 제소된 얘기가 그 본래적 자연적인 의미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는 주장되지 않았다(기사 인용 생략). 이 소송은 소장 제 3 항 기재의 주장에 전적인 기초를 두고 있다(소장 제 3 항 기재의 주장 생략).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특정 출판물이 특별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는 보통사람의 생각에다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하는 보통사람에게는 전달하지 못하는, 특별한 뜻을 전달했음을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이 사건에서 입증되었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프랭크 휴 씨의 아내였고,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녀 자신의 그의 아내라고 표방해온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휴 부인의 이웃 사람들이 그녀를 프랭크 휴 씨의 처로 알고 있었고, 그 기사가 신문에 실렸을 때, 그 이웃에 살고 있던 피트먼 부인과 메어디스 부인의 증언에 의하면, 가는 곳마다 그에 대한얘기를 하고 있었고... 충분한 증거가 있다.

이런 사정 하에서, 제 1 심판사는, 배심의 관여 없이, 그 기사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녀가 존경 받을 만한 결혼을 한 여자가 아니라 그렇게 행세만 하고 있는 전혀 존경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비방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러한 사실

인정은 증거와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Cassidy v. Daily Mirror Newspaper, 114. [1929] 2K. B. 331,340 사건에서 스크루톤(Scrotten) 판사는 「게재된 얘기가 <코리건(Corigan) 씨는 독신>이라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고, 원고가 코리건 씨와 결혼한 사이임을 공언하고 다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간행되었으며, 그 사람들이 요컨대 코리건 부인은 사실상 그와 부도덕한 동거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추론을 도출해 낼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는지의 여부를 말하는 것은 배심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배심원들의 그 판단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그 사건에서 피고들은 신문에서 「약혼이 발표된 바 있는 경마 말 소유자 코리건(M. Corrigan)씨와 X 양」이라는 단어와 함께 코리건 씨와 X 양의 사진을 게재하였었다. 그 사건의 원고는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코리건 씨의 법률상 아내로 인식되고 있었고, 법원의 다수의견에 의해, 그런 발표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뜻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되었는데, 배심원들이 그 신문은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고의 도덕적 인품에 대한 비방을 전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 사건과 이 사건의 사실에 관한 유일한 차이는, 이 사건의 경우 휴 씨와 어울리고 있었다는 그 여자가 그의 아내라고 기술되었지, 그의 애인이라고 기술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그 사건에서 배심원들이 내린 추론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배심의 역할을 담당할 법관에 의하여 내려진 것이다. 케시디(Cassidy) 사건은 이 점에 관하여 조금도 새로운 법을 정립한 것이 아니다. 그 사건에서 설정된, 당시의 현존법률에 대한 유일한 제한은, Capital and Counties Bank v. Henty [1880] 5C. P.D. 514, 사건에서 브레트(Brett) 판사가 판시한 바와 같이, 기사 외적인 사실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흠잡을 데 없는 기사에다 명예훼손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실을 기사간행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다소 오래 전에 나온 이 의견은, 케시디 사건에서 한 러셀(Russell) 판사의 표현에 의하면, 「E, Mutton & Co. v. Jones [1910] A. C.20 사건에서 내린 귀족원의 판결 때문에 유지될 수 없다」 는 이유로 배척당하고 있었다. 아마도 필요가 없었던 두 사람의 원고 측 증인이 조사되었는데, 그들은 무엇보다도 문제의 기사가 그들에게 시사한 의미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피트먼 부인은 그 기사가 언급한 여자는 휴 부인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고, 사실상 휴 부인이 프랭크 휴 씨와 결혼한 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메어디스 부인은, 휴 부인을 20년 동안 알고 지내온 사람으로, 시합 때 참석한 그 곱슬머리 여자는 휴 부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점에 관하여 항소인들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그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거기서 언급된 사람은 휴 부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사를 휴 부인의 혼인한 여자로서의 지위에 어떤 손상을 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고의 부담은, 그 얘기가 공간되면 이를 읽게 될 사람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경우에, 분별력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이 명예훼손의 뜻으로 이해된다는 추론을 하게 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다: Capital and Counties Bank v. Henty [1882] 7 App.Cas. 741. 필요한 증거는, 그 특별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달하지만, 그 지식이 없이 말로만으로는 전달하지 않을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는, 특별한 사실에 대한 것이다: Tolley v. J.S. Fry & Sons, Ltd. [1931] A. C.333. 그러나 그리어(Greer) 판사가

고등법원에서 같은 사건에 관하며 지적인 바와 같이, 「그 입증은 단지 그 말을 명예훼손적인 뜻으로 이해하였음을 증언할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인식을 가진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명예훼손적 뜻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한 어떤 사실의 존재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두 사람의 여자들이 휴 부인이 휴 씨의 아내였음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 기사를 그녀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단지 그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휴 부인이 자신을 휴 씨의 처라고 자처하였고, 이 나라에서는 한 남자가 동시에 여러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기사를 두고 그녀의 도덕적 인품에 대한 비난을 내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그 특별한 사정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당신은 그 얘기를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나요?」라는 질문을 할 기초에 대하여 증인을 환문할 수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 피트먼 부인과 메어디스 부인에게 필요 없이 물어본 그러한 질문이 항소인들에게, 불합리한 것이기는 하나, 하나의 주장을 제기할 기회를 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점에 대한 위 증인들의 증언은 기껏해야, 그들이 그 기사를 비방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원고를 달리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은 결코 나오지 아니한다. 제 1 심판사는, 그 상황을 알고 있는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으로 그 기사를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결론을 올바르게 내렸다.

고다드(Goddard) 판사의 판시요지

이 사건에서 제기되는 법률문제는 이런 식으로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얘기가 그 통상의 뜻으로는 명예를 훼손하지 않지만, 어떤 특별한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제 2 차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뜻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따라서 그 말을 명예훼손의 뜻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상의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지, 즉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Cassidy v. DailyMirror Newspapers, Ltd.* [1929] 2K. B. 331.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인들이 조사되었다. 어떤 얘기가 그 통상의 뜻으로 남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원고가 단지 그 얘기가 출판되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고, 그 얘기를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증인조사는 필요 없으며, 피고가 그 비방을 진실하다고 믿지 않았다는 증언을 해 줄 증인들을 아무리 많이 동원한다고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유일한 의문은,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얘기를 명예훼손의 뜻으로 이해하겠는가 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렇지 않다면 전혀 문제될 바 없는 말에다가, 명예훼손의 뜻을 부여할 사정이 입증된다면, 그 의문은 곧 그 특별사정을 알고 있는 분별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명예훼손의 뜻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된다. 만약 누가 나에게 내 친구가 수치스러운 행위를 했다고 덮어 씌우는 이야기를 한다면, 비록 내가 그런 비방을 진실하다고 믿지 않고, 그 말이 진실과 다르다고 알고 있다고 하여도, 나에게 대한 관계에서 그 친구의 명예는 훼손된 것이다. 따라서 만약 A를 위조범 이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그 비난이 정당한 것으로 믿었다고 증언해 줄 증인의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만약 그가 결혼한 남자인데, 「어제 그가 X양과

결혼했다。」고 말한다면, 그가 이미 아내를 가진 자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계에서, 비록 그들이 그의 중혼을 실제로 믿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말은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프랭크 휴 씨의 처로서 그와는 별거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이웃 사람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었던 사실에 대한 증거는 있었다. Cassidy v. Daily Mirror Newspapers 사건의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사의 얘기는 이들 이웃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뜻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 1 심판사가 만약 배심이 있었다면 배심원들의 판단에 맡겨질 사건이라 하고, 조사된 두 명의 증인들이 그 기사가 전달하는 비방이 사실임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였다. 따라서 그 얘기가 사실상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은 배심원에 갈음하여 법관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Cassidy v Daily Mirror Newspapers, Ltd. 사건의 판결이 없었다면, 나는 사실상 처가 있는 남자가 결혼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의 법률상 아내와 명백히 다른 어떤 여자를 아내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분별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적법한 아내가 그 남자의 정부로 그와 살고 있었다는 생각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얘기는, 물론 케시디가 한 것처럼 그가 그 기사를 내도록 주선하지 않는 한, 명백히 그 남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 의하여 제소 될 수 있는 사안이며, 그 다른 여자에 관하여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정 하에서 그 법률상 아내에 대하여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가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데에는 그리어 판사와 마찬가지로의 어려움을 느낀다. 그렇지만, 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제 1 심판사와 당원은, 이 사건의 얘기가 그에 가해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기소된다. 항소는 기각되었다.